

#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2. 27.

행정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 및 발의자 : 2019. 2. 8.(금), 강동구청장(여성가족과)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9. 2. 12.(화) (의안번호 제81호)

다. 위원회 상정일자 : 2019. 2. 25.(월), 제260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

## 2. 제안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여성가족과장 장경자

나. 제안이유

「아이·맘 강동육아시티」 신설에 따른 세부 운영사항을 추가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책임보육을 실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다. 주요내용

1) 정의 신설 및 삭제(안 제2조제4호 ~ 제8호)

- “아이·맘 강동육아시티” 정의 신설
- “사용료 등”의 정의 개정 및 세분화하여 신설
- “육아누리도서관” 정의 삭제

- 2) 기능 신설 및 삭제(안 제4조제8호)
  - “아이·맘 강동육아시티” 기능 신설
  - “육아누리도서관” 기능 삭제
- 3) 사용 신청에 대한 규정 개정(안 제9조)
- 4) 사용료 등 규정 개정 및 관련 별표 신설(안 제10조제2항, 제3항, 별표2, 별표3)
  - 명칭(수강료) 삭제 및 관련 별표 변경
  - “아이·맘 강동육아시티” 이용료
- 5)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 및 관련 별표 개정(안 제13조제3호, 별표4)
  - 감면 기준 추가 및 감면율 변경
- 6)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 신설(안 제14조제1호, 제2호)
  - 전부 반환 규정 추가 및 귀책사유 주체에 따라 일부반환 내용 구체화
- 7) 시행규칙 제정으로 별지 서식 삭제(별지 제1호 ~ 제3호)

#### 라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
- 2)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3) 기 타
  - 입법예고(2018. 12. 26. ~ 2019. 1. 16.)결과: 의견없음
  - 규제심사: 원안동의
  -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동의
  -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: 원안동의
  - 아동영양평가 결과: 원안동의

### 3. 검토의견

#### 가. 조례안의 취지 및 배경

- 강동구의 장난감도서관을 2008년 6월 1일부터 수탁하여 운영하던 (사)통합지원연구회가 2018년 12월 31일자로 경영상의 이유로 재계약을 포기하였음. 따라서, 강동구에서 보육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하여 직영 운영하고자 함
- 본 개정안은 직영 운영에 따른 관련 운영 규정 및 사용료 등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임

#### 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2조에서 정의하는 아이·맘 강동육아시티는 ‘아이와 엄마가 함께 강동구에서 육아를 누릴 수 있다’ 는 뜻임. 기존 육아누리도서관보다 장난감도서관을 포함한 좀 더 확대된 육아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영하고자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판단됨
-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사항과 별표의 신설사항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9조에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에 이를 조례로 명문화 하는 것임
- 안 별표 2에서 도서 대여를 기존에 권당 300원의 이용료를 징수하였던 사항에서 무료로 변경한 것은 이용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됨. 또한 관내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서 도서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의 이용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됨
- 안 별표 3은 강동구 조례상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기존 50%에서 100%로하고 경로우대자,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추가한 사항임. 국가유공자 또는 경로우대자에 대한 감면 대상자의 추가는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감면사항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

- 감면비율을 높이면 이용자가 많아져 구민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확대 될 수 있음. 다만, 어린이회관 외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감면률 상향 요구가 발생 할 수 있다고 사료됨.

강남구 어린이회관의 경우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7조<sup>1)</sup>를 보면 50% 수준에서 감면을 하고 있음

<b>다.</b>	<b>종합 검토의견</b>
-----------	----------------

- 부서가 제출한 비용추계를 보면, 아이·맘 강동육아시티 조성 시 5년간 약 9억 2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함. 비용추계의 결과와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이 발생, 좀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
이용료·입장료의 감면혜택 증가에 따라 세입의 감소도 예상됨. 아이·맘 육아시티를 포함한 어린이회관은 대부분이 구 재원으로 지원되어 운영하는 상황으로 감면비율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6조에 따르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에 관한 정책·사업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음. 아이·맘 육아시티의 운영사업운영에 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함.
- 본 개정안의 주요사항인 사용료 부분은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라 징수 할 수 있고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에 타당하다고 판단됨.

1) 제17조(사용료 등의 감면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시설의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.

1. 강남구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보육 행사
2. 강남구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보호자 및 보육시설종사자를 위한 교육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
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직계 존·비속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와 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
4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
5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6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) 감면비율을 늘리는 근거가 무엇인지?  
답변) 상위법에 근거하여 감면비율을 100%로 함
- 질의) 상위법에 감면비율을 100%로 하라는 근거가 있는지?  
답변) 확인 후 보고를 드리겠음

#### 5. 수정안 요지

- 수정이유
  - 감면률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 후 조정하고자 기존 감면률로 수정함
- 주요 수정내용
  - 안 별표 4의 프로그램란의 “이용료”를 “체험관 이용료”로 하고, 감면률란의 “100%”를 “50%”로 한다.
  - ※ 붙임 : 수정문, 수정안대비표

#### 6. 심사결과

- 수정안 가결

#### 7. 소수의견의 요지

- 없음

#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#붙임

##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  
안 별표 4의 프로그램란의 “이용료” 를 “체험관 이용료” 로 하고, 감면률란의  
“100%” 를 “50%” 로 한다.

# 수정안조문대비표

(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

개 정 안			수 정 안		
<b>[별표 4]</b> 이용료와 입장료의 감면기준 및 감면률(제13조제2항 관련)			<b>[별표4]</b> 이용료와 입장료의 감면기준 및 감면률(제13조제2항 관련)		
프로 그램	대상자	감면 률	프로 그램	대상자	감면 률
이용료	「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	100%	체협관 이용료	「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	50%
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	100%	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	50%
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수급자	100%	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수급자	50%
	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	100%		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	50%
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자녀	100%	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자녀	50%
	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만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	100%		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만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	50%
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100%	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50%
	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100%		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50%
	강동구 소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(학원)	10%		강동구 소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(학원)	10%
	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기부자와 기부단체	50%		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기부자와 기부단체	50%
입장료	「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	100%	입장료	「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	50%
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	100%	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	50%
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수급자	100%	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수급자	50%
	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	100%		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	50%
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자녀	100%	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자녀	50%
	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만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	100%		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만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	50%
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100%	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50%
	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100%		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50%
	강동구 소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(학원)	5%		강동구 소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(학원)	5%